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2-48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2-396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
- 정선군 공고 제2012-397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7
- 정선군 공고 제2012-408호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정선군 공고 제2012-409호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 정선군 공고 제2012-41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
- 정선군 공고 제2012-412호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2
- 정선군 공고 제2012-415호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4
- 정선군 공고 제2012-416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0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2-48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정선군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195회 정선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년 5 월 24 일

정 선 군 수

(단위:천원)

회계별 /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총 계	301,190,724	279,270,284	21,920,440	7.85%
일반회계	269,292,260	248,699,062	20,593,198	8.28%
기타특별회계	22,808,617	22,337,206	471,411	2.11%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4,456,173	3,606,246	849,927	23.57%
의료급여기금	606,822	579,857	26,965	4.65%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133,052	132,619	433	0.33%
기반시설부담금	125,983	88,398	37,585	42.5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403,482	335,672	67,810	20.20%
주택사업	95,015	94,542	473	0.50%
주차장	381,412	261,000	120,412	46.13%
수질개선	16,606,678	17,238,872	△632,194	△3.67%
상수도사업	9,089,847	8,234,016	855,831	10.39%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396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2. 개정취지**

-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제 출 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 받 는 이 : 정선군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김 정 서

- 우편번호 : 233-701

- FAX : 033) 560- 2593

- 문의사항 : 033) 560- 2562, 김 정 서

6. 참고사항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제정(1998. 08. 25 조례 제1722호)

개정(2005. 06. 09 조례 제19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설치 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5.06.09.>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05.06.09>
6. 위락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 군수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선정함에 있어 전국공모와 자체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작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미술장식 설치확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군수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감정)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 또는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자 료 및 의견의 제출 또는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로 한다.
2. 공동주택 : 1,000분의 1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미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한다.
- ④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에 조례시행일 이전의 기존건축물과 시행일 이전에 건축중인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부 칙(2005.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397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조례안

2. 개정취지

-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제 출 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 받 는 이 : 정선군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김 정 서

－ 우편번호 : 233-701

－ FAX : 033) 560- 2593

- 문의사항 : 033) 560- 2562, 김 정 서

6. 참고사항

-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조례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정(1998. 11. 21 조례 제929호)

개정(2005. 06. 09 규칙 제10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술장식의 설치심의)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제출하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심의기준)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첩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시행일 2011.11.2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25.]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5.]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5.]

□ 강원도 문화예술 조례

제24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허가 후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강원도미술작품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해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9.]

정선군 공고 제2012-408호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근 거

-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제21조 제2항, 동조 제3항
- 나.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 2011. 12. 16.)

3. 개정이유

- 보건진료원 신분전환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띄어쓰기 변경 : 제명, 제1조
- 나. 삭제 : 제2조제3항, 제7조(사무장), 제8조(재정), 제9조(업무수탁)
- 다. 내용의 변경 :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7호, 제4조,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 라. 용어의 변경 :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 마. 제7조(위원의 해촉), 제8조(수당 등), 제9조(재정)을 신설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우편번호 233-808)

○ FAX 제출 : 033-563-4000

○ 문의전화 : 033-560-2550

- 붙임 1.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호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20인 이내의”를 “15인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구성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구성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임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를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는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u>	<u>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u>정선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 ----- <u>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u> ----- -----.
제2조(설치) ① ~ ② (생략) ③ <u>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u>	제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u> 6. (생략) 7. <u>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u> 8. (생략)	제3조(정관) ----- -----. 1. ~ 4. (현행과 같음) 5. <u>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u> 6. (현행과 같음) 7. <u>임원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u> 2. <u>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u> 3. <u>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u>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u>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u> 2. <u>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u> 3. <u>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u>

현행	개정안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u>20인 이내의</u>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운영위원회는 <u>재적구성원</u> 과반수의 출석과 <u>출석구성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5조(기구) ① ----- --- <u>15인 이하의</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재적위원</u> ----- <u>출석위원</u>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 ① (생략) 1. ~ 2. (생략) 3. 운영위원 <u>20인 이내</u> 4. (생략)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u>선임한다</u>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u>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u>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생략)	제6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운영위원 <u>15인 이내</u> 4. (현행과 같음) ② ----- ----- <u>선출한다</u> . ③----- <u>협의회의</u> <u>업무를 총괄하고</u>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무장) ① <u>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u> ② <u>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u> ③ <u>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제7조(위원의 해촉)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 1. <u>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 2. <u>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u> 3. <u>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
제8조(재정) ① <u>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u>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8조(수당 등) <u>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③ <u>협의회는 회계연도의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의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u> ④ <u>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9조(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u>	제9조(재정) ① <u>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u> ② <u>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관 계 법 령 발 첩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 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 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 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 공포일 : 2011. 12. 16.(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정선군 공고 제2012-409호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근 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제25조

3.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중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를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를 “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로 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로 개정

(안 제1조)

나. “다음 각호의 1에”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안 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다. 정선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폐지→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에 포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우편번호 233-808)
- FAX 제출 : 033-563-4000
- 문의전화 : 033-560-2550

붙임 1.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발췌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를 폐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② 군수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1. ~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첩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 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 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라 함은 제5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

○ 공포일 : 2011. 12. 16.(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정선군 공고 제2012-41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5월 17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2018 동계올림픽 한시기구 설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기구 및 인력 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568명(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71명(증 4명)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0명(감 4명)
 - 읍 면 : 180명(현행과 같음)
- 직렬별 정원조정(별표)
 - 일반직
 - 행정·시설 5급 증1명, 행정8급 증3명, 행정·전산 증2명, 환경8급 △1명, 행정·환경8급 증1명, 행정·사회복지 8급 증1명, 행정8급 △1명, 시설9급 △1명, 행정6급·농촌지도사△1명, 농업6급·농촌지도사 △2명
 - 기능직 : 기능7급 증3명, 기능9급 △8명
 - 연구·지도직 : 농촌지도사 증3명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6월0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68	271	11	86	20	87	93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3	226	6	59	16	67	79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4	11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0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0	0					
	행정·시설	4	4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20	68	3	8	4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9			0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0	0					
	행정·농업	8	2				1	5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0			0			
	농업·지도사	0			0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2			2			
	7급소계	146	75	1	22	5	19	24
	행정	47	25	1		0	7	14
	세무	7	6					1
	사회복지	6	3				3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5			1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8급 소계	111	48	0	22	5	18	18
행정	30	15			1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3					0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9급 소계	48	21	0	5	1	9	12
	행정	11	4				4	3
	세무	3						3
	사회복지	11	4				2	5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5	2				2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2	1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4	2	0	2	0	0	0
	연구사 소계	4	2	0	2			
	학예연구·별정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20	3	0	17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8	3	0	15			
	농촌지도사	17	3		14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1			1			
	별정직 계	2	0	0	2	0	0	0
	6급상당 소계	1			1			
	보건진료원	1			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88	39	5	6	4	20	14
	6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기·조무	1	1					

7급 소계		18	12	0	1	2	3	0
	토목	2	2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2	0				2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4	2			1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급 소계		11	4	1	0	1	5	0
	토목	1	1			0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0	0				0	
	영사	1	1					
	운전	4	0				4	0
	필기	1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1	0	1				
9급 소계		55	20	4	5	0	12	14
	토목	3	3					
	전화상담	1	1					
	통신	0						
	전기	2	2			0		
	기계	5					1	4
	열관리	1	1					
	운전	18	4	1	4		4	5
	필기	6	3	1	1		1	
	워드	1		1				
	전산	0	0					
	조무	17	5	1			6	5
	통신·전기	1	1					

정선군 공고 제2012-412호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5월 17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안 제5조제1항)
-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5조의2)
-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 직권면제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안 제10조)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안 제11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 2)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6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임 : 1)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참고자료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제12조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u>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 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u>	② <u>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 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u>			
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5조(임용절차 등) ① <u>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u>			
	② <u>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			
	③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신 설>	1. <u>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 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3. <u>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4. <u>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u> ④ <u>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u>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문제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3. (생 략)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직권면직)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 ----- -----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안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90(2012. 2. 22)호 관련>

2012. 2.

○ ○ ○ 시·도(시·군·자치구)

차 례

I . 개정 배경	1
II . 개정 개요	2
III . 세부 개정내용	3
1. 임용시험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2.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3.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4.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	
5.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IV . 향후 계획	10

※ 경과조치 규정 : 부칙

I

개정배경

□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인사위원회)을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준용) 임용시험 단계 및 방법, 재공고, 서류필기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

-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중 하나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하위 별정직 직위(상당계급)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현행 신규임용 → 개정 재임용**로 간주하고 공고생략

- 또한,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이를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생략

※ 현행 조례상 2종, 지침(예규)상 4종 → 조례상 4종으로 통일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 보완**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II

개정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①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 실시 가능)	제5조 제1항 (개정)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제5조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제4항 (신설)
②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 현행 조례상 공고생략 대상 2종 → 4종으로 확대 1)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로 재임용(지침 → 조례) 2) 직제 및 정원 변경(전보 사유)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지침 → 조례) ※ 현행 조례상 2종, 지침(예규)상 4종	제5조 제2항 3호, 4호 (신설)
③ 임 용 시 험 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마련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제6조 (신설)
④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 장애인 차별 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이미 삭제 개정	제10조 제1호 (삭제)
수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 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 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후임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제11조 (개정)

III

세부 개정내용

1.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

1-1.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행안부 예규 → 조례)

□ 현황 및 필요성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11.8)」에서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 기초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임용시험을 실시 가능(6급 상당 이하는 해당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예규)」 → (개정) 자치단체 조례로 조정

□ 개정내용

-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시험실시기관(인사위원회)을 명시하되, 5급상당 이상은 기초단체장이 자체 또는 시·도인사위원회 의뢰 등 선택적으로 실시가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광역시(○○○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1-2 별정직 임용절차의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행안부 예규 → 조례)

□ 현황 및 필요성

- 조례에서 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시험실시방법 등에 대한 준용근거가 없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에서 준용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시험실시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

* 별정직 채용시험의 근거를 (현행) 행안부 예규 → (개정) 별정직 임용조례로 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내용 ▶

- 임용시험의 방법(제44조), 임용시험의 단계(제45조), 시험위원 위촉·임명(48조)

□ 개정내용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정직 임용조례(표준안)에서 규정하되,
- － 임용시험방법(제44조), 임용시험의 단계(제45조), 시험위원(제48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용절차 등) ④ <신 설>	④ <u>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

2.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 현황 및 필요성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11. 8.22)」에서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규정**
- －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 채용, 3)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4) 기구·직제 개편으로 재임용
- 또한, 현행 조례는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 채용 등 2가지로 규정
- － 3)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4) 기구·직제 개편으로 재임용 등 2가지의 경우가 제외

*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예규)」 → (개정) 자치단체 조례로 조정

- 특히, 그동안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임용(하위 → 상위 상당계급)하더라도 이를 신규임용으로 간주하였고, 「인사상 불가피한 경우」로 전제가 있어 사실상 공고생략후 재임용함은 불가
- 이로 말미암아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일지라도 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상위 상당계급으로 임용됨에 따라
-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포기 등 해당 상당계급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사기침체

공고생략 대상범위 (안제5조 제3항, 임용절차 등)

현 행

- ① 비서관 및 비서
- ② 외국인 임용

개 선

- ① 비서관 및 비서
- ② 외국인 임용
- ③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직위 재임용
- ④ 직제 및 정원 조정으로 재임용

※ 일반직(행정직) 계급별 근무년수 현황(2010. 12. 31, 단위 : 명)

구 분	계	1년미만	1~2년	3~5년	6~10년	11~20년	20년이상	평균
5급	10,168	1,147	2,490	3,574	2,389	565	3	4.8
6급	31,629	2,342	5,033	10,519	9,210	4,384	141	6.3

※ 별정직 상당계급별 근무년수 현황(2010. 12. 31)

구 분	계	1년미만	1~2년	3~5년	6~10년	11~20년	20년이상	평균
계	3,455	322	369	469	649	1,599	47	11.2
5급상당이상	182	46	30	34	17	53	2	8.6
6급상당이하	3,273	276	339	435	632	1,546	45	11.3

※ 별정직 상당계급별 현직위 근무년수 현황(2010. 12. 31)

구 분	계	1년미만	1~3년	4~6년	7~8년	9~11년	11년이상	평균
계	3,455	439	751	489	242	187	1,347	9.8
5급상당이상	182	49	66	17	9	3	38	6.9
6급상당이하	3,273	390	685	472	233	184	1,309	9.9

□ 개정내용

○ 별정직 평균근속연수가 일반직공무원 보다 거의 2배로 장기간임을 감안, 상위 직위 결원발생시 하위 직위 임용시 공고생략하되,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계급별 평균승진연수 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으로 재임용하도록 규정

※ 재임용을 위하여 상위 직위(상당계급)로 정원을 신설 조정하거나 보직이 있는 상위 직위(예 : 국·과장급)로 정원을 조정하여 추진함은 억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용절차 등) ②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
1. <u>비서관 및 비서</u>	1. <u>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
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을 하는 경우)</u>	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3. <u><신 설></u>	3. <u>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4. <u><신 설></u>	4. <u>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u>

3.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행안부예규 → 조례)

□ 현황 및 필요성

- 임용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제도 마련 필요

* 별정직 임용시험의 위탁근거를 (현행) 행안부 예규 → (개정) 별정직 임용조례로 조정

□ 개정내용

-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

□ 현황 및 필요성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제10조에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4종을 규정
 - － 신체·정신상의 장애(1호), 직제·정원 개폐 및 예산감소(2호), 휴직 후 미복귀(3호), 임용권자 필요 인정(4호) 등 4가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8. 4)>

제10조 (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히, 2011. 8. 19,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채용계약 해지)」를 개정하면서 계약해지 사유 중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도 이미 삭제

□ 개선 방안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역시(특별시·도·시·군·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삭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권면직) (생략)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광역시(특별시·도·시·군·구)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 4. (생략)	제10조(직권면직) (현행과 같음) 1.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5.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

□ 현황 및 개정 필요성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개정(2011. 5.3)으로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이 허용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결원보충 방법의 보완·개선 필요
- 특히,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규정하면서
 - － 현행 조문에서 또다른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선발생으로 문구개정 필요

* 별정직 대체인력으로 직종의 특성상 계약직공무원만 가능하고, 업무대행은 일반직 가능

□ 개정내용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 현행 조문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 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IV

향후 계획

- 조례 입안절차 추진
- 지방의회 의안 제출

정선군 공고 제2012-415호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05월 18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

2. 개정취지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 5. 23)과 관련하여 고용직공무원이 폐지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을 “정선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로 개정

나. 제1조 및 제2조중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을 “별정직 공무원” 으로
고용직공무원 삭제

다. 별지제1호서식중 “고용직공무원”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6월0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560-2590)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붙임 1)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을 “정선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직종·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 (자 택)		근속기간	년 월	최 초 임 용 일	년 월 일
				근무상한 연 월 일	년 월 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인 : 인사담당 (인)

정선군수 귀하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u>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u>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생략)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u>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u>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정선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 ----- ----- <u>별정직공무원</u>----- ----- ----- ----- ----- --.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 ----- ----- <u>별정직공무원</u>----- ----- ----- -----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1.8.24] 제2조

※ 제2조제3항제4호 : 고용직공무원 삭제

정선군 공고 제2012-416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5월 18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를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사무 소 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한시기구 부서장의 직급 책정

- 동계올림픽 지원단장 : 지방행정·시설5급

나. 행정기구의 조정

- “녹색환경과”의 명칭을 “생태환경과”로 변경
-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 지원단” 신설

다. 사무의 조정

- 관광문화과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 시설 설치 관리”, “육상실업팀 육성”,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도”,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군단 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을 삭제함.

- 신설되는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 지원단에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중앙 및 도단위 올림픽 시책지원”,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 “동계올림픽 개최지 사례연구”, “동계올림픽관련 각종 행사지원”, “동계올림픽 자원

봉사자 운영”,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환경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 “동계종목 선수 육성 지원”,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 추진”, “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시설사업 지원”,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동계올림픽시설 접근 도로망 확충”,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올림픽 시설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지원”,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관광·숙박시설 등 민자 투자 유치”,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육상실업팀 육성”,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국민 생활체육에관한 사항”,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기타 체육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6월0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붙임 1)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발췌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으로 하고,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생태환경과)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48호부터 제57호까지 및 제59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앙 및 도단위 올림픽 시책지원
3.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
4. 동계올림픽 개최지사례연구
5.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지원
6.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
7.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환경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
9. 동계올림픽종목 선수 육성 지원
10.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 추진
11. 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 시설사업 지원
12.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13. 동계올림픽 시설 접근 도로망 확충
14.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
15.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올림픽 시설 및 개발 행위 등 인허가 지원
17.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18. 관광·숙박시설 등 민자 투자 유치
19.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20.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21. 육상실업팀 육성
22.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23.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
24.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5.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26.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7.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28.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29.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30. 기타 체육 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

②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58. (생략) 59.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0.~66. (생략) <u><신설></u>	58. (현행과 같음) <u><삭제></u> 60.~66.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2(동계올림픽지원단)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u> <u>2. 중앙 및 도단위 올림픽 시책지원</u> <u>3.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u> <u>4. 동계올림픽 개최지 사례 연구</u> <u>5.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지원</u> <u>6.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u> <u>7.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u> <u>8. 문화관광·환경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u> <u>9. 동계올림픽종목 선수 육성 지원</u> <u>10.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 추진</u> <u>11. 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 시설사업 지원</u> <u>12.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u> <u>13. 동계올림픽 시설 접근 도로망 확충</u> <u>14.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u> <u>15.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u> <u>16. 올림픽 시설 및 개발 행위 등 인허가지원</u> <u>17.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 방안 마련</u> <u>18. 관광·숙박시설 등 민자 투자 유치</u> <u>19.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u> <u>20.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u> <u>21. 육상실업팀 육성</u> <u>22.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u> <u>23.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u> <u>24.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u> <u>25.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u>

현행	개정안
	<u>26.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u> <u>27.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u> <u>28.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u> <u>29.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u> <u>30. 기타 체육 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u>

관 계 법 령 발 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